

1. 개정 이유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사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나. 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42개 기종)

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
(안 별표1의2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조치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마. 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 스티커 삭제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법 제8조의2제4항”을 “법 제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별표 4의 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8) 중 “5,000만원”을 “4,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부착형”을 “부착형 동력분무기, 보행자주행 및 부착형 붐스프레이어를 포함한다”로 한다.

버. 주행형 동력분무기(승용자주행 동력분무기, 승용자주행 붐스프레이어를 포함한다)

별표 8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체에 부착하여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110mm ± 40mm		65mm ± 20mm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기 종 명		
형 식 명		
규 격		
제조년월	년 월	
제조번호		
제 조 자 (공급자)	제조사/제조국(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용 도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	

- 1) 재료: 금속 재질
- 2)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 3) 글씨체: 신명조
- 4)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과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16P, 굵은글씨), 이하 내용(14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2. 엔진에 부착하여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50mm ± 15mm		70mm ± 25mm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용 도	농업용 엔진	
형 식 명		
정격출력 /회전수	kW/rpm	
최대출력 /회전수	kW/rpm	
제조번호		
제 조 자 (공급자)	제조사/제조국 (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 1) 재료: 금속 재질 또는 테프론스티커
- 2)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 3) 글씨체: 신명조
- 4)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14P, 굵은글씨), 이하 내용(12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및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3.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엔진 및 본체에 형식표지판을 부착하며, 형식

표지판에 표시되는 제조번호를 본체를 분해하지 않고 육안 확인이 가능한 차대(새시)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새겨야 한다.

가. 새김(각자, 각인) 할 때는 제조번호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표시하되 처음과 끝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조번호에는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 형식(모델)을 의미하는 형식부호 및 제작순서를 의미하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조연도는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조연도 부호는 다음과 같다.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2021	M	2032	2	2043	D	2054	R
2022	N	2033	3	2044	E	2055	S
2023	P	2034	4	2045	F	2056	T
2024	R	2035	5	2046	G	2057	V
2025	S	2036	6	2047	H	2058	W
2026	T	2037	7	2048	J	2059	X
2027	V	2038	8	2049	K	2060	Y
2028	W	2039	9	2050	L	2061	1
2029	X	2040	A	2051	M		
2030	Y	2041	B	2052	N		
2031	1	2042	C	2053	P		

주: 연도별 표기부호는 2061년 이후에 제작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환산 적용한다.

라. 운전자가 탑승하는 주행형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제조번호 규정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비고: 제조번호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여하는 것으로써 농업기계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조번호에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포함됨을 의미한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검정 용도 의 제품	기 종 명		
	형 식 명		
	형식 및 규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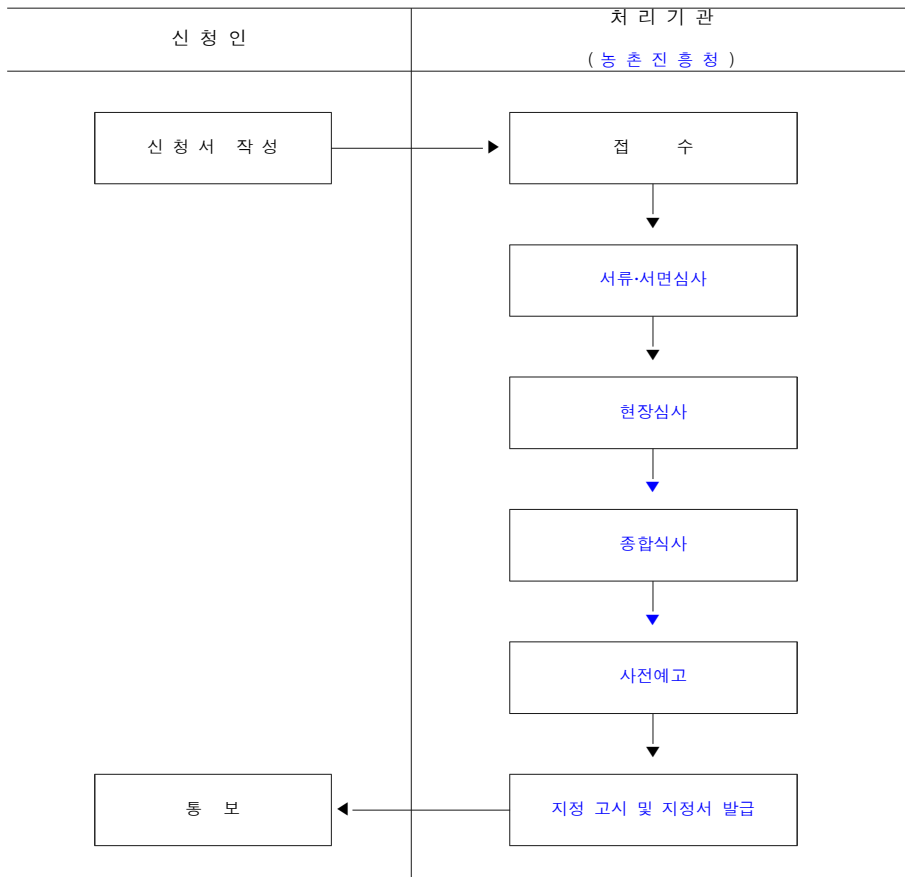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수수료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없음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8의2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된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 (생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의2제5항----- -----.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u>다음 각 호의 농업기계를</u>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동력운반차 3. 농업용 로더(loader) 4. 농업용 굴착기 ② (생략)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 ----- --- <u>별표 4의 검정대상</u>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 -----.												
<table border="1"> <tr> <th>농업기계 구입가격</th><th>1일 임대료</th></tr> <tr> <td>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td><td>195,000원</td></tr> <tr> <td>18) 5,000만원 이상</td><td>210,000원</td></tr> </table>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table border="1"> <tr> <th>농업기계 구입가격</th><th>1일 임대료</th></tr> <tr> <td>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td><td>195,000원</td></tr> <tr> <td>18) 4,500만원 이상</td><td>210,000원</td></tr> </table>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2. ~ 4. (생략)

[별표4] 검정대상 농업기계(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종합검정

가. ~ 머. (생략)

버. 주행형 동력분무기(승용자주형)

서. · 어. (생략)

2. 안전검정

가. ~ 다. (생략)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보행자주형 및 부착형)

마. ~ 어. (생략)

[별표 8의2]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

다.

2. ~ 4. (현행과 같음)

[별표4] 검정대상 농업기계(제14조의2제2항 관련)

1. -----

가. ~ 머. (현행과 같음)

버. ----- (승용자주형 동력분무기, 승용자주형 밍스프레이어를 포함한다)

서. · 어.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보행자주형 및 부착형 동력분무기, 보행자주형 및 부착형 밍스프레이어를 포함한다)

마. ~ 어. (현행과 같음)

[별표 8의2]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 제2항 관련)

1. 본체에 부착하여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

110mm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연월	년 월
제조번호	
제조사 (공급자)	제조사/제조국(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용도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

가. 재료: 금속 재질 또는 테프론스
티커

나. ~ 라. (생략)

2. 엔진에 부착하여야 하는 농업
기계 형식표지판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 제2항 관련)

1. 본체에 부착하여야 하는 농업
기계 형식표지

110mm ± 40mm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연월	년 월
제조번호	
제조사 (공급자)	제조사/제조국(수입품의 경 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용도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

가. 재료: 금속 재질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엔진에 부착하여야 하는 농업
기계 형식표지판

50mm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용도	농업용 엔진
형식명	
정격출력 /회전수	kW/rpm
최대출력 /회전수	kW/rpm
제조번호	
제조사 (공급자)	제조사/제조국 (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가. ~ 라. (생략)

<신 설>

50mm ± 15mm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용도	농업용 엔진
형식명	
정격출력 /회전수	kW/rpm
최대출력 /회전수	kW/rpm
제조번호	
제조사 (공급자)	제조사/제조국 (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가. ~ 라. (현행과 같음)

3. 농업용 트랙터, 콤팩트, 이앙
기는 엔진 및 본체에 형식표지
판을 부착하며, 형식표지판에
표시되는 제조번호를 본체를
분해하지 않고 육안 확인이 가
능한 차대(새시)에 다음 각 목
의 방법에 따라 제조번호를 새
겨야 한다.

가. 새김(각자, 각인) 할 때는 제
조번호 각 자리 사이에 공백
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
로 표시하되 처음과 끝이 명
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
다.

나. 제조번호에는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연도부호, 형식(모델)을 의미하는 형식부호 및 제작순서를 의미하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조연도는 제조번호 첫째 자리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조연도 부호는 다음과 같다.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2021	M	2032	2	2043	D	2054	R
2022	N	2033	3	2044	E	2055	S
2023	P	2034	4	2045	F	2056	T
2024	R	2035	5	2046	G	2057	V
2025	S	2036	6	2047	H	2058	W
2026	T	2037	7	2048	J	2059	X
2027	V	2038	8	2049	K	2060	Y
2028	W	2039	9	2050	L	2061	1
2029	X	2040	A	2051	M		
2030	Y	2041	B	2052	N		
2031	1	2042	C	2053	P		

주: 연도별 표기부호는 2061년 이후에 제작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환산 적용한다.

라. 운전자가 탑승하는 주행형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제조번호 규정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비고: 제조번호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여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번호에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포함됨을 의미한다)

<신 설>